



공민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5. 8. 29.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25호
----------	-------

제출연월일 : 2025. 8. 29.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2024. 7.)」에 따라, 비표준 용어인 “수화책임관”을 상위법 용어 체계에 맞추어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령 부합성과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화책임관”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용어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7조 제4항)
- 나. 조례명 표기 기준에 따라 “논산시포상조례”를 “논산시 포상 조례”로 정비함(안 제11조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기획감사실-8511호(2025. 7. 28.)]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복지정책과-24033호(2025. 7. 24.)]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예산실-8250호(2025. 7. 28.)]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2025. 7. 24. ~ 2025. 8. 13. (20일)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고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041-635-4272)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
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수화책임관”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논산시포상조례」”를 “「논산시 포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복 지 정 책 과	정 경 옥
안	장 애 인 팀 장	오 병 규
자	담 당 자	상 중 규 (746-536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 ③ (생 략)</p> <p>④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u>수화책임관</u>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11조(포상)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u>논산시포상조례</u>」에 따른다.</p>	<p>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한</u> <u>국수어책임관</u>-----.</p> <p>제11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논산</u> <u>시 포상 조례</u>」-----.</p>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 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정 경 옥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